전문가 칼럼

공익신고와 윤리경영 문화 확산

이상범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

공익신고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위해식품의 유통, 부실공사, 오염물질 배출 등 민간의 공익침해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보자'는 한때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줄기세포 조작스캔들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줄기세포 배양에 실패했음에도 성공한 것처럼 세상을 속였던 사건인데, 실제 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의 공익신고로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만약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익신고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행해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찾아냄으로써, 더 큰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공익침해 예방과 부패방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국은 1998년에 공익신고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미국도 부정청구법, 연방공직신고자 보호법 등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그 동안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분야의 공익신고자까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익신고에 대해 기업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자도 공익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공익신고기관으로 정한 이유는 기업에 자율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인이 기업의 공익침해행위를 기업 외부에 신고하게 되면, 기업은 벌금, 과태료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한 비금전적 손실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에 신고했을 경우, 기업 스스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부신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 건강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도 기여합니다.

즉, 기업이 공익신고 처리기능을 갖추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공익신고 처리기능을 갖춤으로써 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공익신고 처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 하반기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 대상 공익신고 교육 및 홍보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권익위의 활동을 적극 활용한다면,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종별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사례에서는 제약업계에서 화두가 되었던 윤리경영 이슈와 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약업계는 그간 리베이트, 생동성 시험 결과 조작, 변질 및 불량 의약품 제조 등 각종 비윤리적인 스캔들로 어려움으로 겪었다. 그 결과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고, 제약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여러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 이슈 1. 리베이트 처벌 받았던 기업들의 변모

리베이트 지급 문제로 인해 많은 제약업체가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매스컴에 보도되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브랜드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매출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제약업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윤리경영 제도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개선에 나섰다.

[사례]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서 대통령상 표창 수상으로

국내 제약업체인 A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의사들에게 음악회 관람비용 등 약 2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당시 담당 임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이 업체는 리베이트 영업이 적발된 이후 직원교육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등을 통해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나섰다. A사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2014년 CP 우수성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5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A사는 CP 전파 확산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제14회 공정거래의 날에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이슈 2. 협회를 통한 공동의 노력

제약 리베이트의 경우 제약 기업이 다 함께 리베이트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업계 전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한 기업이 이에 동참하지 않고 리베이트를 할 경우 다른 기업도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개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협력하여 노력할 때 비윤리적인 경영을 더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협회차원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리강령과 헌장을 제정하여 기업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따를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부당 거래를 추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을 자율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윤리경영 자율진단 지표는 기업 내에 윤리경영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는지를 기업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도구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업에 윤리경영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사내 윤리경영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시장구조, 사업방식, 제품특성 등 제약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진단지표가 개발·활용된다면 윤리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

한국제약협회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손잡고 지난 5월 22일 '제1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한 약무정책 동향' 발표 및 다양한 사례 연구, 사례별 투표, 모의재판 등으로 구성됐다. 제약협회와 KRPIA는 이번 윤리경영 아카데미가 국내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되고, 보완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등 실효성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협회는 하반기에도 아카데미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사례]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투표

제약협회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심기업 무기명 투표'가 처음 실시됐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불법 리베이트에 적극 대응하고 윤리경영을 더욱 확산·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시행되었다. 제약협회는 이사회에서 대리 출석을 포함한 48곳의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첫 번째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전체 제약기업 중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1개 이상 3개 이하의 제약사를 기술한 후 밀봉된 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에서 가장 많이 거명된 제약사 3곳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협회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와 책임관리를 위해 업체들의 답변 내용 및 설문 결과에 대한 정보접근 권한을 한국제약협회 회장으로 국한하여 내용 확인 후 모든 사항을 즉시 파기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 이슈 3. 해외 제약업체 사례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윤리경영에 일찍부터 나섰으며, 자국을 벗어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윤리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평등한 근무환경 등 인권 및 환경문제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해결에 더하여, 가난한 국가에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제약산업 특성을 잘 살리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사례] 독일 Merck 사의 윤리경영

독일의 Merck 사는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제약업체로 널리 알려져있다. 비재무적 보고서인 CSR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Merck 사의 환경보호, 보건, 안전 관련 지출은 2014년 1억 4,600만 유로에 달했다. 중저소득 국가에서 소외계층의 보건에 힘쓰고 있는데, 'Merck Praziquantel Donation Program'을 통해 WHO와 함께 아프리카 열대 풍토병인 주혈흡충증 퇴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년 Merck 사가 생산한 7,500만 정의 프라지콴텔 중 7,200만 정 이상을 WHO와 함께 아프리카에 기부했다. 또한 2011년 그룹 전체 여성 임원 수를 2016년까지 25~30%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는데, 2014년 이미 여성 임원 비율이 26%에 달했다. Merck 사는 202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절감할 예정이며, 2014년 약 8%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국제 사회책임투자 평가지표인 FTSE4GOOD에 선정되어 있으며, STOXX Global ESG Leaders, Euronext Vigeo Eurozone 120-Index, Ethibel Excellence Investment Register 등 여러 지속가능성 투자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 이슈 4. 아직 계속되는 리베이트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사태 이후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최근 다시 한 업체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많은 제약업체들이 CP 및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기에 이번 리베이트 사건이 크게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문제가 전체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사례] B사 리베이트 의혹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B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10여명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사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들에게 B사의 치료제를 처방해준 혐의이다. B사는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운영 자금을 허위 기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해당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결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과 제약협회에서 추진하는 아카데미 및 윤리헌장, 강령 제정 등 제약업계는 불법 및 불공정거래를 추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기간에 이제까지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비윤리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면 제약업계에도 윤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6944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52600010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6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87213
http://news.donga.com/3/all/20150722/72652918/1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677518&code=46111502&cp=nv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0093
http://www.merck.co.kr/ko/media/Copy_of_press_releases/news_korea.html

동향&소식

최근 윤리경영 동향

국내 윤리경영 동향

산업정책연구원, 기업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은 국내 산업계 지속가능경영 도입수준을 진단하고 인식확산과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TM)'를 1차 핵심평가 1백60개 기업, 2차 심화평가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14년도 조사결과,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87.68점으로 전년대비 0.5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지속가능경영 비전(93.86점), 윤리경영(93.48점), 환경경영(90.91점), 고객(89.75), 작업장(88.78점), 지배구조(86.25점), 협력업체(83.99점), 지역사회(73.5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을 중소·중견기업(협력사 포함)으로 확대하였으며, 산업계 안전 관련 지표를 보완하였다.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TM)는 산업발전법 제18조, 19조에 근거하여 국내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8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개별 신청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2015년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의 진단 결과와 각 영역별 해외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지속가능경영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31/0200000000AKR20150731092400848.HTML?input=1195m

경제개혁연대 "임원보수 결정 기준 여전히 불투명"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지난해 3월 사상 처음으로 임원 보수가 공개된 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은 아직까지도 베일에 싸여 있으며, 기업의 반발로 공개횟수도 줄었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임원 보수지급에 의문이 있는 국내 대기업 10개사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질의 회신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몇몇 대기업들은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를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임원 보수 지급이 중요 경영정보 또는 사적인 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159조에는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계는 1년에 네 차례 공개는 부담이 크다며 공개횟수 축소를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 이에 민관합동규제회의는 공시횟수를 1년에 한 번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75032

경기도 생협 10개 매장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경기도는 도내 생협 매장 10곳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숍인숍(shop in shop)'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를 넓혀주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교육실에서 품평회를 열고 참가한 도내 3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가운데 10개 기업, 25개 제품을 최종 숍인숍 입점상품으로 선정했다. 또한 경기도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이 친환경 먹거리와 윤리적 생산, 소비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생협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908423444199

해외 윤리경영 동향

Ethical Corporation, 'State of Sustainability 2015' 조사 결과 발표

윤리경영매거진인 Ethical Corporation지는 State of Sustainability 2015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 세계 기업 및 비영리기구, 정부에서 일하는 1,5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69%의 응답자는 자신의 CEO가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9%만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기업의 방향성, 문화에 있어 CEO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89%의 응답자들이 지속가능성이 기업경영전략에 있어서 점점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응답했다. 이번 State of Sustainability 2015 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이 앞으로도 기업운영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Ethical Corporation, Best of 2015.

노르웨이 국부펀드, 국내 환경파괴 기업에 투자 중단

8,700억달러(1,031조369억원)의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가 환경파괴를 이유로 B기업과 모기업인 A기업에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GPFG는 B사가 인도네시아 아열대 산림에서 진행하고 있는 팜오일 농장 개발사업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생태보전이라는 윤리적 차원에서 앞으로 두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GPFG는 같은 이유로 말레이시아의 겐팅과 IJM사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르웨이국부펀드는 지금까지 50여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무기생산 등을 이유로 투자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GPFG는 지난해 말 기준 A사 지분 0.9%와 B사 지분 0.3%를 보유하고 있다. FT는 이번 투자 중단 결정으로 두 회사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지만 다른 투자자들이 국부펀드로서 영향력이 큰 GPFG와 뜻을 같이 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508/e2015081908521247830.htm

미국, 상장기업 CEO-종업원 임금격차 공개 의무화

미국에서 대다수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종업원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도 재무제표처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표결을 통해 CEO 의 임금이 종업원 평균 임금의 몇 배인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찬성 3, 반대 2 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해 소기업이나 신성장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상장회사는 2017 년 1 월 이후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부터 임금 격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 집계에서 지난 2 분기 임금 상승률은 불과 0.2%로 0.7%였던 지난 1 분기보다 둔화되며 1982 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불과 5 년 전 종업원이 1 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경영자는 20 달러를 받았지만, 현재는 경영자가 300 달러를 받을 정도로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2&oid=018&aid=0003301140

행사 브리핑

◎ 행사 이모저모

2015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시상

지난 7월 3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2015 윤리경영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2007년 제정된 윤리경영 대상은 올해로 8회째 개최되고 있으며, 이윤 창출 외에 기업과 연관된 모든 지역사회, 임직원, 고객 등에 대하여 윤리경영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기업을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국남동발전, 부산시설공단, 서비스에이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예술문화위원회, 엔젤메디칼, 더휴앤컴퍼니, 서비스탑, 이레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38361

◎ 국내외 행사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 CSR 포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에게 UN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CSR의 내용과 동향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현지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최 : UNGC 한국협회
- 일시 : 2015년 9월 7일(월)
-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Ritz Carlton 호텔

출처: http://www.unglobalcompact.kr/wp/?mod=document&uid=1014&page_id=2386

윤리경영과 부패리스크 관리를 위한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 컨퍼런스

뇌물 관련 법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표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주최 : BSI Group Korea
- 후원 : 영국 외무성, 주한 영국대사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일시 : 2015년 9월 15일(화)
- 장소 : 주한 영국 대사관 Aston 홀

출처:https://www.gov.uk/government/world-location-news/international-conference-on-anti-bribery-management-system-to-be-held-in-seoul-on-15-september.ko

2015 UN Private Sector Forum

2015년 9월에 설정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업의 기여 방안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 주최 : UNGC
- 일시 : 2015년 9월 26일(토)
- 장소 : 미국 뉴욕 UN본부

출처: http://www.unglobalcompact.kr/wp/?mod=document&uid=978&page_id=2386

글로벌 리포트

이번 호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의 공익신고자 관련 법률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전세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적 협력의 중심 요소가 되어왔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글로벌 반부패 전략의 핵심요소로 인식했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및 정부 내부의 부정행위를 조기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2012년 Los Cabos에서 채택된 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을 통해 각 국은 자국의 내부 공익신고자 관련 법률을 국제원칙에 맞도록 개정하거나,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관련 법률을 입법했다. 이처럼 2010년부터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세계 각 국은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에 해당 법률을 이미 제정한 국가들은 이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발전시키고 있다.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I) 호주지부는 Whistleblower Protection Law in G20 Countries를 발간하여 세계 각국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법을 공익신고 보호법 적용 대상자, 공익신고자보호 적용 법률, 보호범위 등 14개 원칙에 대해 평가했다. 여기서는 해당 보고서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미국의 법과 가장 진전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법, 그리고 일본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미국

미국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별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워터게이트사건 후에 제정된 1978년 행정사무개혁법에서 발전하여 1989년 제정된 연방공직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이 있으며, 개별법 형태로 운영되는 민간부문의 경우 도드-프랭크법과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1986)을 들 수 있다. TI 호주지부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외부보고채널, 내부공개절차, 보호자 구제 3개 원칙에서만 2점을 받았고, 나머지 11개 원칙에서는 모두 최고점인 1점을 받아 20개 국가 중 제일 좋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1989년 입법된 미국의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은 정부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고한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여 연방정부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퇴직자 및 공무원 지원자를 포함한 미 연방정부공무원 대부분을 보호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중대한 관리부실, 재정의 중대한 낭비, 권한남용,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그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기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 및 책임, 근무조건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금지된 인사조치로부터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은 2012년 개정되어 기존의 허점을 보완하고 법률적용 부패행위의 범위를 넓혔으며, 'Anti-gag'부서를 통해 내부신고자를 비밀유지조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공직자에 의한 내부신고는 2007년 482건에서 2012년 1,14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관련 재판에서 내부신고자의 승소는 50건에서 223건으로 증가했다.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Act)

금융시스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증권거래 관련 법률위반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부신고자로 그 신고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신고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소(SEC)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정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고, 근무조건상의 차별과

관련한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임금 지급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2013년 SEC는 내부신고자에게 총 1,40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SEC를 통해 6,573건의 내부신고가 이루어졌다.

부정청구법 (False Claims Act)

연방정부에 사기성 청구 등 부정청구행위를 한 경우, 누구나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손해방지에 기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1863년 입법되었다. 미국의 부정청구법은 링컨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연방보급품 구매과정에서의 군수품 업자들의 사기가 만연하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링컨법(Lincoln Law)'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연방정부와의 계약에서 '사기적 청구'(fraudulent claims)와 같은 부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 및 일반국민이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986년 개정을 통해 승소시 소송 수익 또는 배상청구 화해금의 15~25%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소송제기로 인해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복직,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1986년 법 개정 이후 미국정부는 총 35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다.

<부정청구법 사례>

미국 제약업체인 AMGEN 사는 자사 의약품 Aranesp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받은 복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복용하게 하는 'Off-label'방식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액을 늘렸다. AMGEN 사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51%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고 수익을 늘렸다. 이를 통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연방 보험기금은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고, 2012년 부정청구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을 통해 미국 정부는 6억 1,2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다.

◎ 영국의 공익신고법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PIDA)

영국정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 보복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1998년 공익신고법(PIDA)을 도입했다. PIDA는 가장 진전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법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내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다른 국가들의 관련 법률에 영향을 주었다. 범죄행위, 법률위반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근무환경의 침해 및 이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현직(파견)근로자, 계약체결자, 현장실습 또는 직무훈련자가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국방부 및 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내부신고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이 법은 2013년 공익신고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 이익'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개정되었다. 또 단계적 신고제도를 통해 소속기관, 규제당국, 외부공개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기업내부에서의 문제해결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외부공개의 경우 반드시 '선의'를 통해 '공개사항이 사실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과 이로 인해 '개인의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TI호주지부의 보고서에서 영국의 PIDA는 최하점인 3점을 받은 익명성, 내부공개절차, 감독당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원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외부공개 4가지 조건>

- 내부신고자가 소속기관이나 규제당국에 신고할 경우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
- 규제당국이 없고 증거들이 은닉되거나 파괴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
- 내부공개가 이미 이루어졌을 경우
- 내부 신고사항이 예외적으로 아주 중요할 경우

◎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 保護法)

2002년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식품의 위장표시사건과 자동차의 리콜은폐사건에서 내부 근로자에 의한 신고를 계기로 범

죄행위가 외부로 드러나면서 공익통보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4년 일본정부는 공익을 위해 근로자가 통보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공익통보자보호법은 공익통보 및 공익통보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익통보자에 대한 해고의 무효 등 민사원칙을 정하고, 통보자·사업자·행정기관의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행정기관 직원을 신고적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명, 신체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환경의 보전, 공정한 경쟁의 확보와 관련된 450여개 법률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신고대상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신고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공익신고자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어 공익신고를 오히려 억제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TI 호주지부의 보고에서도 일본의 공익통보자 보호법은 익명신고가능여부, 공익신고 비밀보장여부, 내부신고 절차를 갖추게 하는지 여부,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감독당국, 법의 투명성 및 신뢰성 부분에서 모두 최하점인 3점을 받았다.

<일본 내부고발자 사례>

일본 대법원은 일본의 A전자업체에 대해 내부고발 판매직원에 대한 처벌행위를 중지하고 해당 직원을 원래 직위로 복귀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2013년 말까지도 해당직원은 원래 직위로 복귀되지 않았고 이전 일과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

또한 A전자업체의 전 CEO인 마이클 우드포드는 회사가 13년 동안 150억 달러 가량의 엄청난 투자손실을 은닉했음을 폭로한 후 2011년 해고되었다. 이 과정에서 투자손실을 은폐한 두 명의 경영진이 사내 내부고발 핫라인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내부고발자 보호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 우드포드는 그의 해고에 대해 회사로부터 1,54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받았다.

◎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TI 호주지부의 평가

TI 호주지부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매스컴 등 제3자에 고발 시 보호여부, 익명신고 가능 여부, 기업에 내부신고 절차를 갖추게 하는 부분에서는 최하점인 3점, 보호요건 부분에서는 2점을 받았지만, 이들을 제외한 9개 부분에서는 최고점인 1점을 받았다. G20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4개 원칙이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in G20 Countries, Simon Wolfe, 2014
해외 신고자보호법 비교, 국민권익위원회, 2015
http://www.justice.gov/opa/pr/amgen-inc-pleads-guilty-federal-charge-brooklyn-ny-pays-762-million-resolve-criminal

윤리경영 스터디.

윤리경영 스터디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UNGC)

이번 호 윤리경영 스터디에서는 UN Global Compact의 'Guide to Corporate Sustainability'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에 핵심역할을 하며 사회 전반에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중요한 경영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UN Global Compact(UNGC)는 'Guide to Corporate Sustainability'를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다. 다섯 가지 요소로써 글로벌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운영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 경영진의 노력, 기업 내부문화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DNA를 심는 것에 주목했다.

[참고] UN Global Compact

UNGC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 100여개 이상 국가의 8천여개의 기업회원과 4,000여개의 비기업회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2000년 7월 창설된 UNGC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UNGC 10대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고 기업과 세계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글로벌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문제에서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UNGC 10대 원칙은 이러한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60개국 8천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10대 원칙은 세계 인권 선언,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UN 부패방지협약을 통해 도출 되었다.

<UNGC 10대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규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사회에 공헌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은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기 힘들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펼치지 못하게 한다. 현재 점차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기업이 속한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주력사업을 통한 사회공헌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는 기업의 주력사업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략적인 사회공헌

다른 기업의 사회공헌방법을 따라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 자신만의 핵심역량을 살려서 사회적으로나 기업 스스로에게나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영향력 행사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기업이 가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 큰 효과를 볼 수있다. 기업은 협력기업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기업들이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자들이 탄소세, 투명한 공공조달 등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더 빠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파트너십

기업, 투자자, 정부, 국제기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을 통해 최근 15년간 가난, 자연재해, 환경보호, 평등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공동협력을 통해더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으며, 자원을 절약하고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

◎ 경영진의 노력 (Leadership Commitment)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은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지속가능성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사회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그 역할을 주목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이사회를 통해 기업의 장기목표와 이를 위한 전략이 수립되는 만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UNGC 참여자들 중 39%는 이사회가 지속가능성 이슈를 이사회 고유의 업무로써 다루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54%의 참여자들은 이사회 내 관련 위원회를 두거나 담당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51%는 이사회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승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이사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사회가 지속가능성 이슈를 이사회 고유의 업무로서 다루어야 한다

이사회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승인해야 한다

이사회내 관련 위원회를 두거나 담당이사를 두어야 한다

공급망

UNGC 참여자들은 기업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하청업체 등의 공급망을 참여시키는 것을 어려운 과제로 뽑았다.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원칙 적용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83%의 UNGC 참여자들은 공급업체가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하기를 기대했고, 60%는 공급업체가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할 것을 문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17%는 공급업체에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공급망내 지속가능성 원칙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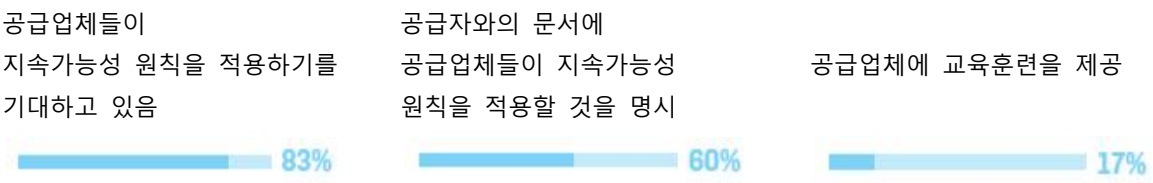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행보고서 작성 (Reporting Progress)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재무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보고서 작성은 투자자, 시민사회,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계속 증가해왔다. UNGC 회원 기업들 중 비재무적 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의 수는 2004년 167개 사에서 2013년 5,017개 사로 급증했다. 이처럼 비재무적 보고서 작성이 증가한데는 투자자의 역할이 컸다. 총 40조 달러 규모의 1,200개 투자사들이 속해 있는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PRI)와 전세계 17,000여개 기업이 상장된 16개 증권거래소가 소속된 Sustainable Stock Exchanges(SSE) 이니셔티브는 기업들에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소비자와 시민사회 역시 소비자 구매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탄소배출, 작업장 인권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자발적인 공시 외에 유럽연합, 중국, 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 상장사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 지역사회에 참여 (Local Action)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는 기업 지속가능성의 바탕이 된다. 기업은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기업은 각 지역사회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에 봉착한 부분을 함께 해결하는 등 더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 결어

이제 지속가능경영은 트렌드를 반영하는 경영전략이 아니며, 오늘날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노력을 통해 교육,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들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기업의 지속 성장으로 환류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국제원칙 준수, 좀 더 진보된 방식의 사회적 공헌, 경영진의 노력, 이행보고서를 통한 소통, 지역사회에 참여를 통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UNGC 한국협회 홈페이지

Guide to Corporate Sustainability, UNGC,

윤리캘린더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이번 호 윤리 캘린더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된 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 이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익침해 확산 방지에 저해하는 부분이 있고, 공익신고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근거 미비,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력 부족 등 신고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대상 법률이 확대됨을 물론, 내부 공익신고자보호가 강화되었으며 보상금제도 개선 등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2015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공익신고대상 법률 확대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를 위해 공익신고 대상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포함시키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등 국민 다수와 관련되거나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등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총 99개의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에 신규로 추가하였다. (기존 180개 → 279개)

구분	주요 법률
국민 다수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률(52개)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도선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17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행위가 은밀하여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27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신고는 되었으나, 적용대상 법률에 미포함된 법률(3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 당시에 불법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를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불이익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공익침해행위가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보호조치가 가능했던 것을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 실효성 강화장치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보호조치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의 감면 외에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2천만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 사례>

산업기능요원이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못하고 방사선에 과다 피폭되는 작업환경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해당 기업은 산업기능요원 종사 지정업체 등록을 취소당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한 산업기능요원은 자신의 신고로 인해 회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생산이 아닌 기획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병역법' 위반사실이 드러나 '440일 복무연장 처분'을 받게 되었다.

개정 이전의 법으로는 이 신고자가 받은 복무연장 처분이 용기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인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형벌 및 징계에 대한 감면 근거만이 규정되어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 보상금제도 개선 및 포상금제도 신설

파파라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서민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행정처분액의 4~20%를 지급하도록하는 보상금 제도는 내부 공익신고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위원회가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포상금 제도는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분	보상금	포상금(신설)
요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절차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액의 4~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위원회의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내부·외부 공익신고자

*출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http://blog.daum.net/loveacrc/8348
http://blog.daum.net/loveacrc/6834

One Point Lesson

One Point Lesson

Q. 요즘 신문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A. 국가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그 재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써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811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59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과 연구개발 자금 등 정책성 재정지출이 부정하게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90일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 농·어·축·임업 분야
- 교통 분야(보스보조금·유가보조금)
- 교육 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 체육 분야(체육단체 보조금)
- 문화예술 분야(콘텐츠 산업 육성 등 보조금)
- 복지 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 노동 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 기업 보조금)
- 산업 분야(중소기업창업·벤처육성 등 보조금)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권익위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blog.daum.net/loveacrc/?menuId=050507, 권익위 블로그

이달의 책

서적 리뷰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마케팅

저자: 고은주, 패션마케팅연구실
출판: 교문사
출판일: 2015. 7. 29
정가: 20,000

패션 브랜드의 지속가능 사례들을 통해 국내의 많은 패션 기업들의 인식을 한층 더 제고하고, 패션 소비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속가능 실천의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모두 6장으로 나누어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의 총 17개 브랜드 사례의 미션과 비전, 실제 전략들을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시장, 소비자 현황과 함께 살펴본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사업의 정석 - 카네기 사업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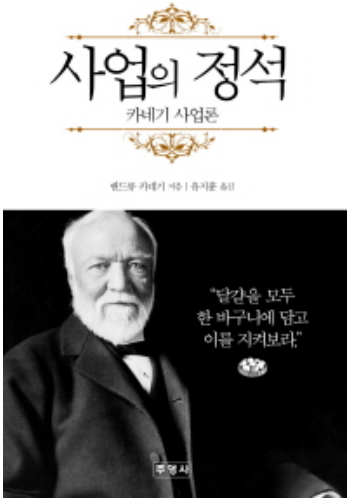

저자: 앤드류 카네기
출판: 주영사
출판일: 2015. 8. 20
정가: 13,000

『사업의 정석』은 카네기가 철강업으로 거부가 된 뒤에 사업에 대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크게 사업이란 무엇이며, 사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노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의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는 카네기의 글은 예비 사업가 및 현역 사업가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즐거운 윤리

윤리경영 사용설명서
clean 명절 문화 캠페인
야~올해는 휴가 끝나면 바로 추석이야 너무 좋아
우와! 진짜 그러네요?
그나저나 팀장님 선물 어떡하지?
에이~노 대리님! 내부 직원끼리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모르세요?
그래야 알지만~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지~
노대리! 노대리 마음 알았으니까 마음만 내 고맙게 받을게
올~
헉 팀장님!
팀장님 짱짱맨 멋있어요!
으쓱
선물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기!
김차장님 명절 전에 회의 한번 하시죠?
아, 네
아... 명절 전인데 선물을 사가야 돼 말아야 돼~?
저... 매니저님 이거 받아주십쇼! 제 작은 성의입니다
아이쿠.... 이러면 안되는데~
명절 전 이해관계자에게 선물, 금품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머 김성실씨 이게 뭐예요?
아니 협력업체에서 말도 없이 추석선물을 보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수 없이 선물을 받은 경우 회사 내 감사 관련 부서에 접수해 주세요
아하
올 추석엔 우리 모두 Clean 명절 문화를 만듭시다!

자료제공 : 롯데백화점